

'ramucirumab(품명:사이람자주)' 위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

질문

<다. 투여단계: 2차>에서 연번 1번 'ramucirumab + paclitaxel' 요법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 비용 부담은 공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?

- <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>에 'ramucirumab + paclitaxel' 병용요법은 세부 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2차 요법으로 투여 시 'ramucirumab'(비급여), 'paclitaxel' 약값 본인 일부부담(5/100)으로 인정되었으나, 공고일(2018.5.1) 이후에는 'ramucirumab + paclitaxel' 전체 요법에 대해 약값 본인일부부담(5/100)으로 급여 인정됩니다.
- 아울러,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2차 요법으로 'paclitaxel' 단독요법을 시행중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'ramucirumab' 추가 시 급여 인정 됩니다.
- 또한, 투여대상의 항목 ①과 관련하여 1차 고식적요법의 [fluoropyrimidine + platinum (cisplatin, oxaliplatin) + trastuzumab]에 실패한 환자도 포함됩니다.

※ 관련 신설 위암 급여 기준 항목

2. 고식적요법(palliative)

다. 투여단계: 2차(second-line)

연번	항암요법	투여대상
1	ramucirumab + paclitaxel	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1차 요법으로 [fluoropyrimidine + platinum(cisplatin, oxaliplatin) ± anthracycline (doxorubicin, epirubicin)]에 실패 ② ECOG 수행능력 평가(PS: Performance Status)가 0 또는 1 ※ paclitaxel은 아래와 같이 투여 시 급여 인정함 ○ paclitaxel 80 mg/m ² IV on days 1, 8, 15, every 4 weeks